개인회생 신청 전 서류·증빙자료 준비 체크표

법률·규칙의 첨부 범주와 내 사건의 증빙자료를 구별하는 준비 체크표

먼저 구별하세요

이 체크표는 **서류 준비 상태를 정리하는 안내문**입니다. 법원 제출용 신청서가 아니며 개인회생 신청 자격·개시·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아래 1·2번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의 첨부 범주입니다. 3번의 개별 증명서 예시는 그 범주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**사건별 자료**이며, 예시의 모든 증명서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'법정 필수 서류'라는 뜻이 아닙니다. 접수 법원·전자신청 방식과 보정 요구를 실제 제출 시 확인하세요.

각 행의 상태는 확보 / 준비 중 / 해당 여부 확인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. '해당 여부 확인'은 법령상 필요한 자료를 마음대로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. 주민등록번호·계좌번호·주소 등은 이 공개용 자료의 빈칸에 적지 마세요.

1. 법률 제589조 제2항: 신청서 첨부 범주

법률상 범주	준비할 문서·확인할 점	현재 상태
개인회생채권자목록	채권자 성명·주소, 채권 원인과 금액의 누락 여부를 대조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재산목록	소유·보유한 재산과 그 가액의 기재를 대조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	신청서·진술서와 소득·지출의 기재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	자신의 소득 유형과 실제 수입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진술서	사건 경위와 목록의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과거 신청 관련서류	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·화의·파산·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	아래 2번의 자료 범주와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
법 제589조 제3·4항에 따라,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**일부 행정정보**는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, 법에서 정한 전자문서 등재 요건을 충족하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. 어떤 자료가 실제로 대체되는지는 신청 법원의 최신 안내와 동의·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이 체크표만으로 일괄 생략하지 않습니다.

2. 대법원규칙 제79조 제1항: 추가 첨부자료 범주

규칙상 자료 범주	사건별 확인점	현재 상태
① 채무자의 주소·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	신청서의 본인 표시와 인적사항 자료를 대조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② 법에서 정한 소득금액	급여 또는 영업소득 자료와 실제 수입 내역을 대조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③ 소득세·주민세·건강보험료 등 법정 공제금액	수입·지출 목록에서 공제한 금액의 자료를 대조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④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	생활비와 부양·주거 사정에 관하여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⑤ 영업의 경영·보존·계속에 필요한 비용	영업소득자라면 사업 비용의 성격과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⑥ 재산목록의 재산가액	각 재산의 평가 근거와 기재 금액을 대조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⑦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채권액·담보재산 가액 평가자료	담보권의 종류·채권액·담보재산 평가자료를 확인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⑧ 채무자 재산의 등기·등록된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	등기·등록 재산의 보유 여부와 해당 문서를 확인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⑨ 법원 밖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경우 그 확인자료	시도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.	□ 확보 □ 준비 중 □ 해당 여부 확인

위 ⑤·⑦·⑧·⑨처럼 사실관계가 조건이 되는 항목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. ‘규칙상 자료 범주’와 특정 발급서류의 이름을 혼동하지 마세요.

3. 사건별로 범주를 뒷받침할 자료의 예

아래 예시는 **자료를 찾는 방향**일 뿐,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내라는 목록이 아닙니다. 실제 보유·거래·소득 형태와 법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.

확인하려는 사실	찾아볼 자료의 예	대조할 곳
채권자·채무의 원인과 금액	계약서, 채권자의 잔액자료, 거래·납부내역, 독촉·소송 관련 문서	채권자목록과 신청서의 채무 기재
재산과 평가 근거	계좌·보험·차량·부동산·임대차 관련 자료 중 실제 해당하는 것	재산목록의 소유·가액 기재
급여 또는 영업소득과 지출	급여명세·소득자료, 사업 매출·비용자료, 실제 입출금내역 중 해당하는 것	소득유형 증명자료와 수입·지출 목록
과거 절차·사적 채무조정	과거 사건 결정문·접수자료, 사적 조정 신청·처리자료(해당 시)	법 제589조 제2항 제6호·규칙 제79조 제1항 제9호

자료가 없을 때: 임의 숫자나 문서를 만들어 넣지 말고, 어떤 자료가 없는지와 발급처·대체 가능 여부를 정리해 실제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. 같은 채무·재산·소득이 신청서, 각 목록, 진술서에서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도 다시 대조하세요.

제출 전 마지막 확인

-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 **신청일부터 14일 이내** 제출하는 것이 법 제610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.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. 이 체크표는 변제계획안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
- 법원의 추가 요구, 전자신청 첨부 형식, 관할과 비용은 실제 제출 시점에 확인합니다.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허용하는 서류 작성·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에서 돕고,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개인정보와 금융자료 원본을 홈페이지 댓글이나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.

공식 근거·확인일
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(law.go.kr)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(law.go.kr)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(www.law.go.kr)

자료 검토 기준: 2026년 10월 4일. 법령·법원별 제출 안내는 실제 접수 시 최신본을 다시 확인하세요.